

실버우대연금예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실버우대 연금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예금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저축의 종류는 정기예금이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만 50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이며 1인 1계좌로 한한다.

제4조 【저축한도 및 가입기간】

- ① 이 예금은 예금 가입후 일정 거치기간이 지나고 연금 지급기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리금 분할 지급식 정기예금이다.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최고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 ②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거치기간과 연금지급기간으로 구성하며, 거치기간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연단 위, 연금지급기간은 1년이상 20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연 단위로 각각 정할 수 있다.

제5조 【예금의 지급방법】

- ① 이 예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발생한 이자를 원천징수하여 원금에 합산한 후 원리금을 총 지급횟수로 균등 분할한 금액(원리금분할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
- ② 연금지급주기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정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액은 원리금분할액과 매 연금회차의 이자(원천징수액 제외)를 합한 금액이다.
- ③ 연금지급방법은 고객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우체국 요구불예금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제6조 【기본이율】

- ① 거치기간의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현재 정기예금의 기간별 만기일시 지급식 이율을 적용한다.
- ② 거치기간내 금리변동주기를 1년, 2년, 3년 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 매 금리변동주기 해당일마다 고시한 이율로 기본이율을 적용한다.
- ③ 연금지급기간의 기본이율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 고시한 정기예금 1년만기(월이자지급식) 이율을 연단위로 적용한다.

제7조 【우대이율】

- ① 거치기간에는 실버금리, 보너스금리, 우체국장전결 금리를 적용하며 연금지급기간에는 실버금리를 적용한다.

- ② 각 항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 ③ 실버금리 : 만 50세 이상의 실버고객 연 0.1%p
- ④ 보너스금리 : 다음 각 호에 해당시에 각 항목당 연 0.1%p씩 최고 연 0.3%p까지 우대이율을 적용, 단 제2호는 가입자 본인이 신규 가입일 이전 3개월 이내 수령한 퇴직금(최소 1천만원 이상)에 한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4대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우체국 요구불예금으로 수령하는 고객
 2. 공무원, 군인, 교직원, 회사원 등의 퇴직금을 동 예금에 예치하는 경우
 3. 우체국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이상이며 자동이체약정 2건 이상인 경우
 4. 우체국 체크카드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실적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⑤ 우체국장전결금리 : 신규 가입일 현재 기간별 전결금리 적용
- ⑥ 우대이율은 매 금리변동주기 해당일을 기준으로 각 우대이율 적용 항목을 재확인하여 변동된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 ⑦ 우대금리는 우체국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제8조 【이율적용방식】

-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 ② 기본이율은 금리변동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하며 매 금리변동주기 해당일 현재 고시한 정기예금 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
- ③ 우대이율은 금리변동시 각 우대이율 적용 항목별로 재산정하여 금리변동주기 단위로 적용한다.
- ④ 우대이율은 신규 가입일 및 금리변동주기 해당일에 각 우대이율 항목에 대하여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우대이율 적용이 가능하다.
 1. 「퇴직금 예치」는 가입자 본인이 신규 가입일 이전 3개월 이내(신규가입일의 전전전월의 1일부터 신규가입일까지) 수령한 퇴직금(최소 1천만원 이상)에 한하며 퇴직금 명세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우체국 요구불예금으로 4대연금 수령 고객」은 신규 가입시 증명서류(연금수령확인서, 우체국 요구불예금 통장 등)를 제출하거나 요구불예금 전산 조회(전산 조회 기준일 : 신규가입일 전월 1일부터 신규가입일 까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3. 「요구불예금 거래실적」은 요구불예금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하며 전산 조회 기준일은 최근 3개월(신규가입일의 전전전월의 1일부터 신규가입일 까지)로 한다.

4.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하며 전산 조회기준일은 최근 3개월(신규가입일이 포함된 월의 전월 3개월)로 한다.

제9조 【이자지급방식】

- ① 거치기간의 이자는 거치기간 종료일에 거치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원천징수액 제외)를 원금에 가산한다.
- ② 연금지급기간의 이자는 연금지급기간 개시일부터 매 연금회차별 연금지급액(원리금분할액 + 매 연금회차 이자 - 이자소득세)에 포함되어 연금지급주기별로 지정된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여기서 연금지급기간 개시일은 거치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 ③ 연금지급일이 휴일(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인 경우 그 익영업일에 자동 입금한다.

제10조 【이자계산】

- ①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을 곱하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단수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 ② 거치기간에는 매 금리변동주기 해당일마다 고시한 기본이율에 재 산정된 우대이율을 합산한 이율로 변동되며 금리변동주기 단위로 복리 이자계산(세후복리)한다.

$$1. \text{ 거치가간의 이자} = \text{원금} \times \text{적용이율(연)} \times \left(\frac{\text{예치일수}}{365} \right)$$

③ 연금지급기간에는 매 1년 연금지급개시일 해당일마다 고시한 기본이율에 실버금리를 합산한 이율로 변동되며 단리로 이자계산한다.

1. 매 연금회차 이자 = 매 연금회차 원리금잔액 × 적용이율(연) × $\left(\frac{\text{예치일수}}{365}\right)$

제11조 【중도해지】

① 거치기간내 중도해지

1. 금리변동주기 단위 경과 기간에 대해서는 금리변동주기별 해당 적용이율(기본이율+우대이율)을 적용하며, 금리변동주기 단위 미경과 기간에 대해서는 신규가입일 또는 매 금리변동주기 해당일 현재 고시한 정기예금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2. 중도해지 이자 = 원금 × 중도해지이율(연) × $\frac{\text{예치일수}}{365}$

② 연금지급기간내 중도해지

1. 연단위 경과기간 : 연단위별 해당 적용이율(기본이율+실버금리) 적용

2. 연단위 미경과 기간 : ‘연금지급개시일’ 또는 ‘매 금리주기변동 해당일’ 고시되는 정기예금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매 연금회차의 원리금잔액』에 대하여 셈하여 지급하고 이미 지급한 연금지급주기별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3. 매 연금회차의 중도해지이자 산출방식

○ 중도해지이자 = 원리금잔액 × 중도해지이율(연) ×

$\frac{\text{예치일수}}{365}$

○ 지급액 = 원리금잔액 - 기지급 회차별이자 + 기지급 이자소득세 + 회차별 중도해지이자 - 이자소득세

제12조 【만기후해지】

매 연금지급주기 연금지급액을 고객 지정계좌로 자동 입금하므로 만기 후 이율은 없다.

제13조 【연금지급의 제한】

압류, 지급정지 등 지급제한 등록 계좌는 연금지급이 불가하다. 다만, 지급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연금지급이 가능하다.

제14조 【세금관계】

- ① 일반과세,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 가입 가능하다.
- ② 원리금 균등지급에 따른 원금 감소를 반영하여 고객이 최초 지정한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 한도 자동 감액 처리 한다.

제15조 【기타】

- ① 연금지급기간 및 연금지급주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거치기간 만료일(연금지급 개시일) 전에 1회에 한하여 창구에서 본인 확인 후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 ② 이 예금은 만기일(최종 연금지급일)에 자동 해약된다.
- ③ 우수고객우대금리, 고액예금우대금리 및 본부승인금리 지급이 불가하다.
- ④ 이 예금은 분할인출, 담보제공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17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